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3. 5. 11. (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3차 회의록(요약)

- 일 시 : 2023. 4. 13.(목) 14:00 ~ 18:20
- 장 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연번	안 건	의결사항	의결정족사항
1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가결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에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를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8명 - 조건부 가결 8명
2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가결 - 신청유산의 구성요소에 반구대 계곡을 포함하고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것 - OUV기술에 반구대 계곡 내용을 포함하고 신청유산의 국문명칭을 조정할 것 - 신청유산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존대책(물 관리 등)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8명 - 가결 8명
3	한국의 기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8명 - 가결 8명
4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 분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 본 개발계획은 공산성이 지니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HIA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8명 - 보류 8명

상기 내용을 보고함.

2023.5.11.(목)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서기

목 차

【심의사항】

1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완료	1
---	-------------------	---

【보고사항】

2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 - 공능분과) 소위원회 구성보고	6
---	-------------------------------	---

심 의 사 항

1.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완료

가. 심의사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추진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세계유산 시행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15건) 심의를 요청합니다.

나. 심의사유

- 우리 청은 「세계유산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음(‘22. 1월~)
- ‘세계유산 종합계획(‘22. 4월 수립)’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어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심의를 요청하는 바임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 그간의 추진경과

- (‘22. 1월 ~) 세계유산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수립주체 선정(문화재청→공능본부, 각 지자체 등)
- (‘22. 2월 ~)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작성요청(문화재청→공능본부, 각 지자체 등)
 - *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양식 배부
- (‘22. 4월) 세계유산 종합계획(2022~2026) 수립(문화재청)
- (‘22. 6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중간점검(문화재청→공능본부, 각 지자체 등)
- (‘22. 9월~‘23. 2월) 세계유산 시행계획(15건) 접수완료(공능본부, 각 지자체 등→문화재청)
- (‘22.12.28 ~ ‘23.4.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문화재청 사업부서 의견수렴
 - 1차 「석굴암·불국사」 등 13건의 시행계획(‘22.12.28~‘23.1.31)
 - 2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 3건의 시행계획(‘23.3.6~4.6)
 -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1차 의견수렴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2차 의견수렴 함
- (‘23. 5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완료

<참고> 의견수렴 결과(중앙행정기관 및 문화재청 사업부서)

▶ 중앙행정기관(총47개 기관) 및 문화재청 사업부서(총20개 부서) : 1개 기관 의견제출(교육부)

- 내 용 : 고순·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내 포함된 ‘초·중·고 학생 대상 유산교육 강화’는 전북지역 내 학생들에게 지역유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필수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반영여부 : 반영(해당부분 삭제)

라. 주요 포함사항

- 세계유산 시행계획 개요 :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정책환경, 대응방향 등
- 비전 및 주요과제
-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연도별 업무 추진계획
- 추진사업별 세부계획
- 재원조성계획

마. 향후계획

- (‘23. 5~6월) 문화재청 승인 및 해당 지자체 통보(문화재청)
- (‘23. 6월) 공능유적본부 및 해당 지자체 공표
- (‘23. 10월) 연도별 사업계획 지침배부(문화재청→공능본부, 각 지자체 등)

- 세계유산 종합계획 (‘22~26년, 5개년, 문화재청 수립)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세계유산지구 지정, 국제협력 등
- 세계유산 시행계획 (‘23~27년, 5개년, 세계유산별(관할 지자체, 공능본부) 수립)
 -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보존·관리 사업의 시행, 주민 참여 방안, 관광활성화 방안 등
- 연도별 사업계획 (‘24년~, 매년 12.31.까지 제출, 세계유산별(관할 지자체, 공능본부) 수립)
 -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세부계획, 추진 실적 등

보 고 사 항

2.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 - 공능분과) 소위원회 구성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 태릉’과 ‘고양 창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세계-공능)합동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 지난 '22. 7월, 문화재위원회(합동분과)는 ‘서울 태릉’과 ‘고양 창릉’ 주변 공공주택 지구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공능)합동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23.5.1일자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합동분과(세계-공능) 소위원회 현황

- 배 경
 - 공공주택 지구 개발행위 관련 민원이 유네스코에 접수되어('19년 창릉, '20년 태릉), 문화재청은 관련 정보를 회신하였고 유네스코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요청
 -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2. 7. 12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세계-공능)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였음
- 추진현황 : 합동분과 소위원회 5회 개최(태릉 2회, 창릉 3회)
 - (서울 태릉) : '22.9.15, 11.10 / *최종결과 : 조건부 가결
 - (고양 창릉) : '22.11.10, '23.1.12, 2.27 / *최종결과 : 보류
- 위원현황 : 총 6명(세계3, 공능3)
 - (세계) ○○○, ○○○, ○○○
 - (공능) ○○○, ○○○, ○○○

다. 검토의견

-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라. 그간의 추진경과

- [붙임 1 참고]

마. 향후계획

- (5월)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세계-공능)
- (안건 신청 시) 소위원회 심의

바. 참고사항

(1) 신청인 : ○○○○○○

(2)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조선왕릉(태릉, 서오릉)
- 문화재명 : 서울 태릉강릉(사적/’70.05.26.지정), 고양 서오릉(사적/ ’70.05.26.지정)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

[붙임 2 참고]

붙임 1. 그간의 추진경과

연번	일시/장소	의결사항	의결정족사항
【합동분과】 서울태릉,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1	○'22. 7. 14,(목)(16:00~) ○국립고궁 박물관 회의실	○ 보류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권고 사항은 합동분과에서 의결한다.	○출석: 20명 ○보류: 20명
【합동분과 소위원회 I】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1	○'22. 9. 15,(목)(11:00~) ○공능본부 태릉 회의실	○ 보류 - 해당 사업이 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연지복원 등)와 부정적 요소(경관 저해 등)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평가 준비서를 보완한 후 재검토 함.	○출석: 6명 ○보류: 6명
2	○'22. 11. 10,(목)(16:00~)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조건부 가결 -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권고안 1안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함 1. 연지 주변 100~200m 구간을 설정할 것 2. 원지형을 존중하여 계획을 설정할 것 3. 수고, 용적 등에 대해 자료를 보완할 것	○출석: 5명 ○조건부 가결 5명
【합동분과 소위원회 II】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1	○'22. 11. 10,(목)(16:00~)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보류 - 자료를 보완하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	○출석: 5명 ○보류: 5명
2	○'23.1.12,(목)(14:00~)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보류 - CM 지구에 대해서는 용적율,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계획 등 지침을 변경할 것 - CM 지구 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수목 차폐선 이하가 되도록 건축물 높이 및 배치를 조절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완충구역 및 진입로에 대해 가치와 속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출석: 6명 ○보류: 6명
3	○'23.2.27,(목)(14:00~)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보류 - 지침 변경 방향은 동의하나, 구체적인 예시, 제시 등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함 - M1, M2, S9, A6 4개 구역을 중심으로 수목차폐선 이하가 되도록 최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종합전체배치도와 시각 시물레이션 자료를 보완하여 제시할 것 -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료보완 후 별도 논의필요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2. 참고사항

❖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 면적 : 7,890,0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84,625㎡(1.1%))
- 세대수 및 계획인구: 37,889세대 / 83,290인
- 추진 경과
 - (지구지정 고시) '20.3월 국토부 고시(제2020-245호)
 - (지구계획 승인) '21.12월 첫마을 사전청약* 위해 '21.11월 승인완료
 - * (사전청약) '21.12월 3개블록 1,697호 / '22년 5개블록 3,691호 예정
 - (유산영향평가) '21.11.11. 착수 및 진행 중
 - (토지보상) '22.6.13 보상 착수, 6.17. 대토보상 공고
 - (향후계획) '23.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 / '27. 下. 최초입주 / '29. 下. 준공

❖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
- 면적 : 874,59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109,899㎡(12.6%))
- 세대수 및 계획인구: 6,800세대 / 16,574인
- 추진 경과
 - '20. 8. 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20. 10.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LH → 국토부), 1만세대(안)
 - '21. 8.25.~9.8.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800세대(안), 공원녹지율 40%)
 - '21. 12.27.~ 세계유산(태릉·강릉)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 착수
 - (향후계획) '22.下 지구지정 / '24. 초. HIA절차이행완료 / '24. 上.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5. 上 공사착공 / 28. 下. 사업준공